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64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의사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수급추계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2. 9.
3. 회 부 일 : 2026.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축산·가축방역 등 공익적 분야에서의 수의사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의사의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확대되는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수의사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수급추계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수의사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수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3(수의사 수급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 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중장기 수급추계는 제3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한편, 축산현장에서는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료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반려동물 의료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수의사로 임명되어야 하는 가축방역관 직

위에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등,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의사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이 변화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활동 수의사 중 반려동물 수의사 종사 비율 현황 】

(단위 : %)

구분	2019년	2021년	2023년	2025년
활동 수의사 중 반려동물 수의사 종사 비율	44.2	45.9	49.1	54.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최근 수의사의 유사 직역에 해당하는 의사 등에 관하여 「보건 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장기 수급추계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수의사 역시 이와 같은 수급추계를 통하여 수급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수의사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수의사의 수급을 관리하여 특정 분야의 수의사 부족 현상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수의사 인력의 수급계획과 중장기 수급추계는 자격제도에 따른 한정된 수의사 인력공급 구조에서 수의사의 영업상 이익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관련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추계 시 그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유사 직역인 의사의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상 중장기 수급추계 제도 신설 과정에서 일부 갈등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추계위원회 등의 규정이 함께 마련되었고,

그 위원으로는 ① 보건의료 공급자·수요자·학회 등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서, ②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위촉하도록 하여,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 바 있음.

【 「보건의료기본법」 에 따른 중장기 수급추계 심의 위원회 】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 의사

2.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3.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

2.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지역 단위 수급추계

3.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

1) 참고로, 대법원은 유사 직역인 한의사의 면허를 강화상 허가로 본 바(대판 1998. 3. 10., 97누4289), 수의사 면허 역시 강화상 특허가 아닌 강화상 허가로서 그 영업상의 이익은 법률을 통해 보호되는 이익이 아닌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상의 이익이라도 입법과정에서는 사회적 혼란 및 갈등 방지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일 것임

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급추계위원회는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3.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⑦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한다.

⑧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⑨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수급추계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 결과, 그 밖에 수급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⑪ 수급추계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수급추계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 및 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이하 “수급추계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3. 12. 확인

개정안은 단순히 수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기본시책 수립·시행과 주기적인 중장기 수급추계 실시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기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심사과정에서 수급추계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의 우려가 나타날 경우에는, 유사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수의 분야별 수급 불균형 심화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정 수의인력 수급 추계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이나,

대한수의사회는 개정안의 발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향후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 관련 수요 및 처우 개선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²⁾

문 의 처
02)6788-5416

2)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 비용추계서, 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